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48
----------	-------

발의연월일 : 2026. 2. 6.

발 의 자 : 신정훈 · 문금주 · 차지호
김문수 · 채현일 · 윤종균
이정문 · 이광희 · 강득구
황명선 · 김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인해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폭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적 비상 상황임.

특히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21곳이 소멸 위기 단계에 진입하여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지역 붕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파편화된 시·도 단위의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

이에 본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남부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중앙 정부 주도 발전 모델에서 탈피하여 지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지방주도 성장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특히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5·18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양 지역의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하고, 통합특별시를 재생에너지와 AI·반도체 산업의 거점인 ‘신남방경제수도’로 육성하여 호남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재가동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핵심 행정·재정 권한을 통합특별시, 시·군·구로 과감히 이양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수도권 집중화라는 국가적 망국병을 치유하여 소멸 위기의 지방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탈바꿈시키는 국토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호남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완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5·18 광주정신을 계승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미래 산업 기반의 도농복합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남방경제수도로 도약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완수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존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 하에 관할 구역을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등에 관한 포괄적인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통합특별시 내 시·군은 기존의 사무와 권한을 유지하며, 통합특

별시장은 자치구의 자치권을 시·군 수준으로 확대하는 '기초자치권 강화 및 자치구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마. 자치분권 실현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통합특별시의 필수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시·군·구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남광주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전 광주광역시에 교부되던 보통교부세 중 자치구 해당분을 통합특별시를 거치지 않고 해당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시장은 정무직 부시장 임용 시 시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며,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해서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아. 자치감사의 독립성을 위해 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되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고, 감사위원 구성 시 시의회·교육감·시민사회의 추천 인사를 반드시 포함함(안 제8조 및 제9조).

자. 농어촌 지역의 생활 안정과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1년 이상 거주 주민 및 해당 지역 출생 영유아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농어촌기본소득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안 제10조).

차. 재생에너지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남방향로 물류 거점, 에너지·제조 융합 특구, 비즈니스 교류 센터를 구축하는 등 신남

방 경제수도를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11조).

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별도의 '농업·농촌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조정·지원 사업에 이를 사용함(안 제12조).

타.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하여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두어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며 국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안 제13조).

파.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연합형으로 통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 거점 대학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지원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함(안 제14조).

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위해 재정 지원을 실시하며, 유족회 단체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특례를 부여함(안 제15조).

거.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지원 및 세제 감면,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 완화 등의 제도적 특례를 제공함(안 제16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5·18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와 전남을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과 에너지 등 미래 산업 기반의 도농복합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남방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함으로써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완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위와 위상을 가진다

제3조(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각각 폐지한다.

② 정부의 직할 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 할 구 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광주광역시 일원, 전라남도 일원

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가 통합하여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

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지위 및 권한 특별례)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의 시·군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통합 전의 시·군이 수행하던 사무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특별시장은 통합을 이유로 시·군의 행정상·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특별시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와 시·군 간의 자치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초자치권 강화 및 자치구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의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을 시·군 수준으로 확대·조정하는 방안

2. 자치구의 도시계획 입안권, 독자적 과세권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 방안

③ 특별시의 사무 배분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군·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시장은 광역행정 수요 대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를 시·군·구로 포괄적으로 이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양된 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시·군·구의 장을 관계 법령에 따른 주무관청으로 본다.

제6조(통합특별시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① 통합 특별시는 자치분권의 실현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단계적으로 관할 구역의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이양하여야 한다.

1. 초광역적 도시계획, 광역교통체계 및 광역인프라의 수립·조정
2.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초광역 경제권 계획 수립 및 집행
3. 대규모 재난 관리, 수계 관리 및 광역적 환경 보전
4. 특별시 전체의 통합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 시·군·구로 이양할 사무를 발굴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전남광주 자치분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와 시·군·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사무이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의회에 보고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이양 대상 사무, 예산 지원 규모, 인력 재배치 및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로 이양하기로

결정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해당 사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특례 규정에 따라 시·군·구의 사무로 본다. 이 경우 관련 법령상의 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권한은 해당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본다.

⑤ 특별시장은 사무 이양으로 인하여 시·군·구에 과도한 재정적·인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양된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은 시정명령 등 최소한의 사후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이양하기로 결정된 구체적인 사무의 종류,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제7조(보통교부세의 교부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에 교부하던 보통교부세 교부액 중 자치구 해당분은 통합특별시의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통합특별시교육청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통합특별시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9조(인사청문회)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의회는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통합특별시의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 임명동의안 등이 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 경과가 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를 연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5항에 따른 인사에 관한 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

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통합특별시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의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사에 관한 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 청취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0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이 법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감사위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의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통합특별시의회의가 추천한 사람을, 1명은 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그리고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1명을 임명·위촉한다.
- ④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의회의 및 통합특별시교육감, 시민사회는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감사위원장은 통합특별시의회의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장의 임명한다.
- ⑥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⑦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인사 및 감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1조(감사위원장의 직무)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농어촌기본소득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출생하여 주소지를 해당 농어촌 지역에 둔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

④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액은 지역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과 방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한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⑥ 국가와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에 소속 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기본소득의 지급 절차, 중단 및 환수, 실거주 확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13조(신남방 경제수도의 구축 및 육성에 관한 특례) ① 신남방 경제수도란 통합특별시가 보유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강점을 활용하여, 아세안(ASEAN) 및 인도 등 남방 국가와의 경제 협력, 공급망 안정화 및 문화·인적 교류를 주도하는 거점 경제권을 말한다.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신남방 경제수도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인프라 및 배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남방항로 물류 거점: 신남방 국가와의 해상 물류를 전담하는 거점 항만 및 스마트 물류 배후단지 조성
2. 에너지·제조 융합 특구: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신남방 국가 수출용 저탄소 제품 생산 및 첨단 제조 산업단지 구축
3. 비즈니스 교류 센터: 신남방 국가와의 통상 지원, 규제 조화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 기구

③ 통합특별시장은 5년마다 신남방 경제수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신남방 경제수도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신남방 국가와의 부문별 협력 목표, 항만 및 산업 기반시설 확충 방안, 자원 조달 계획 및 전문 인력 양성 대책을 포함한다.
2. 통합특별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가는 신남방 경제수도 구축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항만·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장이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 항만 관리 및 외교적 교류 협력에 관한 사무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야 한다.

⑥ 통합특별시는 신남방 국가와의 특화된 산업·교육·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14조(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농업·농촌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되,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조정

·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종전에 의대 없는 지역인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 산간 지역, 섬 지역, 산업단지 등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거점대학 육성 특례) 국가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연합형으로 통합하여 교육 및 연구 역량 향상,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국가 거점 대학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여수·순천 10·19사건 정신 계승 및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성격과 인권적 의미를 계승·확산하고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유족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가기념일지정, 피해보상, 재단설립, 피해자·유족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사업 및 기록물의 보존·관리 활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수·순천 10·19사건 유족회 단체의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농림·수산·해양 등 지역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은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 거점 도시로서 정책조정 및 사업 연계를 총괄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 내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투자 기준 금액을 하향하는 등 체류자격 부여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중전시도에 설치된 시·군·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군·구로 본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시·군·구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된 시·군·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중전시도 소속의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될 당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전시도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공무원의 임용 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그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⑤ 중전시도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될 당시 종전시도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 종전시도의 조례·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규칙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⑧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한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시도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원서류의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소로 본다.

⑨ 종전시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된 후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해당 지역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

제3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교육감을 포함한다)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에 실시한다.

②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회의원정수 산정 및 선거구역 획정은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이 법 시행 후 통합특별시의 의회의원 보궐선거등(「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을 말한다)의 선거구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지역구 시·도 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특별시의 의원정수는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종전의 전라남도의 인구,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